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3. 06.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과 군정발전에 노력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장학생의 자격 완화, 대상자 확대, 장학금액 인상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장학생 대상자 확대(안 제1조)

○ 중·고생 ⇒ 중·고·대학생

나. 장학생 자격 완화(안 제2조)

○ 입학 또는 재학중 과목별 성적이 「우」 평점 50% 이상인 자

⇒ 중·고생은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학년별 또는 계열별)의 100분의 60 이내인 자

⇒ 대학생은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학년별 또는 계열별)의 100분의 70 이내인 자

다. 장학생의 정원 완화(안 제5조)

○ 장학생은 연간 군내 이장 정수의 15% 이내로 한다

⇒ 장학생은 이장자녀 중 제2조의 자격기준에 해당되면 모두 지급

라. 장학금액 인상(안 제6조)

○ 재학생(수업료+육성회비), 신입생(수업료+육성회비+입학금)

⇒ 매학기별 중·고생은 공납금의 전액, 대학생은 2년제 70만원, 4년제 100만원

마. 장학금 지급방법 개선(안 제7조)

○ 학교장을 통해 지급 ⇒ 학부모에게 지급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예산편성후 반영

다.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 해당없음

마.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중·고·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현재 이장으로 재직중인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품행이 단정한 자중 중·고생은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학년별 또는 계열별)의 100분의 60이내에 해당하고, 대학생은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학년별 또는 계열별)의 100분의 70이내에 해당하는 자. 다만, 입학성적의 확인이 안될 경우 직전 학년의 학과 성적으로 한다.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중 도단위 이상 개인 또는 단체의 3위 이내 입상자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기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예산의 절감과 수혜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타 장학금 수혜자는 추천에서 제외 한다.

제4조(선발 및 심의) ① 평창군이장자녀장학금 선발심의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②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매 학기 개시 후 2월 이내 확정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이장 자녀중 제2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면 모두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 학기별 중·고생은 공납금의 전액; 대학생은 2년제 70만원, 4년제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액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매 학기 명단 확정 후 1월 이내에 군수가 학부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이장이 이장직에서 해촉되었을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5.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타 장학금 수혜대상자로 선발된 때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의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할 날부터 시행한다.